

201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수시모집)

모 집 요 강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1.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학 모집요강 (수시모집, 성신교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교정	학부(과)	입학정원	정원 외 모집인원	
			재외국민(2%)	외국인
성신	신학과	50	2	제한없음

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모집합니다.

나. 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12년 전(全) 교육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제한 없이 모집합니다.

2.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접수	2018.09.10(월) 09:00 ~ 09.14(금) 17:00까지	· 성신교정 교학팀
제출서류 접수	2018.09.10(월) 09:00 ~ 09.14(금) 17:00까지	· 성신교정 교학팀
면접고사	2018. 10. 12(금) 14:00 ~	· 성신교정 지정고사장 ※ 고사시작 30분 전까지 고사대기실로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	2018. 10. 26(금) 14:00(예정)	· 성신교정 홈페이지 (http://songsin.catholic.ac.kr)
합격자 등록	2018. 12. 17(월) ~ 12. 19(수)	· 입학동의서 제출
등록금 납부	2019.01.30(수) ~ 02.01(금)	· 본교 홈페이지 안내 참조

3. 지원자격

가. 자격 기준 공통사항

- 1) 학제 차이로 국내 수학기간과 외국 수학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이나 학기를 중복 이수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2) 초·중·고등학교 과정은 한국 학제(12년)를 기준으로 합니다.
- 3)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월반과 조기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특례입학 자격기준(특례인정기간 산정기준, 학교과정 인정 및 해석 기준 등)은 종전 기준(대학 특례입학 업무 처리 편람)과 관계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 5)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9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교 입학 후 고교졸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6)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만을 인정합니다.

나.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초·중·고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2019년 2월 28일 이전 국내·외 정규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과 학력요건을 충족하는 자

대 상	자 격 요 건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단위:년)									학 력 요 건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① 영주교포의 자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3	3	3	-	3	3	3	3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이수한 자 (비연속인 경우 고교 2년 포함 중·고교 4년 이상)
②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국제기구)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상사직원,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3	3	3	3	3	1.5	3	1.5		
③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	3	3	3	3	1.5	3	1.5		
기 타 재 외 국 민	④ 현지 법인 직원 및 자영업자의 자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현지법인 및 자영업자의 자녀	3	3	3	3	3	1.5	3	1.5	
	⑤ 대학 전임교원의 자녀	외국에 공식 파견되어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대학 전임교원의 자녀로서 부모의 소속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3	3	3	3	1.5	3	1.5	
	⑥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	3	3	3	-	-	-	-	-	

※ **외국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 기준**

① 외국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보호자 근무국 공관장이 발행한 제3국 수학인증서 제출)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제외

② 지원자격 요건에 나와 있는 재학기간 동안 부모와 지원자가 함께 거주(영주, 근무, 체류)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해외수학기간 동안 지원자는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연속 3년 이상(통산 4년 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의 부모는 지원자의 지원자격으로 인정된 외국 학교 재학 기간(연속 3년, 통산 4년)의 1/2(연속 1년 6개월, 통산 2년) 이상을 체류해야 합니다.

※ **공무원의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②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③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④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⑤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①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②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상사직원·공무원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합니다(유학·교육·연수·출장 또는 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 입학허용기간

재외국민 및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지원자는 고교 졸업 학년도가 시작되는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2년 6개월 이내(군복무 기간 제외)에서 2개 학년도(재수까지 가능)에 걸쳐 지원이 가능합니다.[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및 12년 이상의 전(全)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는 지원 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학정원 제한 없는 외국인

1) 외국인전형 지원자격 구분

대 상	자 격 요 건	공통학력요건
①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국내 또는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②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12년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내·외국인 학생	외국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어학능력 필수조건

- 대상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 한국어 자격 기준 : 아래 ‘1)~3)’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TOPIK 4급 이상 취득하여야 졸업 가능)
 - 1) TOPIK 3급 이상
 - 2) 본교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취득자
 - 3) 위 1) 또는 2)에 상응하는 어학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교가 정하는 면접·구술 평가에서 학업 능력을 인정받은 자)

※ 외국인의 범위

복수국적자·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합니다.

※ 대만 국적의 외국인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이고 다른 일방이 대만인인 대만 학생의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으로 인정합니다.

※ 외국에서 12년 전(全) 교육과정 이수자

① 외국(1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제의 차이로 이수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도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의 자격을 인정합니다.

②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의 이수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4. 원서접수 방법

- 가. 입학원서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http://songsin.catholic.ac.kr>)에서 내려받습니다.
- 나. 원서접수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학팀에 방문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5. 전형 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계열	지원구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필답	서류전형	면접(구술)
성신교정 신학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	-	-	100

-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내·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전형 대상입니다.
- ※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시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면접고사 전형방법

한국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전공수학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A, B, C, D로 평가하며 'D'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6. 선발 방법

- 가. 전형총점 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선발합니다.
 - ① 외국 학교의 재학기간이 많은 자
 - ② 연소자
- 나.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원자는 지원자 수에 관계없이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전형료(서류평가 및 지원자격심사비 포함) : 80,000원

8. 제출서류

- ※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발급기관 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거나, 서류 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 확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도 인정-11페이지 11항 참조)
- ※ 제출 서류상의 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번역공증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전형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 상 일부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미제출 서류 제출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고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가. 재외국민 및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재외국민

제출 서류	영주 교포 자녀	유치과학 기술자 · 교수요원 자녀	상사 직원 자녀	외국정부 ·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공무원 자녀	본인만 외국인	현지법인 직원 및 자영업자의 자녀	대학 전임 교원의 자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재외국민	비 고
1.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자격 확인서, 학적 및 성적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	○	○	○	○	○	○	○	▪ 본교 소정양식 ▪ 12년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는 초·중·고 학적 및 성적조회 동의서 모두 제출
2. 초·중·고등학교 졸업(재학)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	○	○	○	○	○	○	○	○	외국 학교에서 발급한 모든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3. 보호자 재직증명서 (외국 체류 경력 증명 내용 기재)	-	○	○	○	○	-	○	○	-	본사 인사권자 발행
4.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모두) <단, 본인만 외국인,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재외국민 - 학생만 제출>	○	○	○	○	○	○	○	○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5. 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이혼, 사망 등의 경우 별도서류 추가제출)	○	○	○	○	○	-	○	○	○	-
6.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 말소 사실증명서	○	○	○	○	○	○	○	○	○	본인만 외국인의 경우 국적상실확인증명서
7. 해외지사(법인)설치 인증허가서 사본	-	-	○	-	-	-	○	-	-	현지법인 직원 자녀 혹은 자영업자의 자녀인 경우, 소속 법인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8. 영주권 사본(부,모,학생 모두)	○	-	-	-	-	-	-	-	-	-
9. 유치과학기술자 ·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	○	-	-	-	-	-	-	-	-
10. 외국인 국적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학생)	-	-	-	-	-	○	-	-	-	외국인등록증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함
11.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	○	○	○	-	○	○	-	-
12. 대학 재학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	○	○	○	○	○	○	○	○	해당자에 한함
13.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서류									○	해당자에 한함

※ 대학 전임교원의 자녀는 부모 소속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이외의 모든 외국어로 된 서류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서 안내는 11쪽 11항 참조.

※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학한 학생은 제3국 수학인정서(보호자 근무국 공관장 발행)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나. 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외국인)

제출 서류	비 고
1.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자격 확인조서, 고등학교 학적 및 성적 조회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본교 소정양식
2.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해당 국가 번역 공증 후 반드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제출하여야 함 ① 주재국 한국 영사 또는 주한 자국 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서 제출 ②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서 제출 ③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서울공자아카데미) 발행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서울공자아카데미(사단법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을 통해 신청 (문의 : 02-554-2688, http://www.cis.or.kr)
3.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12년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외국인 : 초,중,고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4.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1부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5.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중국국적자의 경우 호구부(원본 제출)와 친속관계증명서(해당국가 공증필) 모두 제출> ▪ 부모의 이혼, 사망 등의 경우 별도 제출(친자관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추가 제출)
6.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함 ▪ 앞면, 뒷면 복사하여 제출
7. 외국인국적증명서(부모, 학생) 사본 1부	▪ 별도 공증 필요 없음(해당국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복사하여 제출)
8. 대학 재학(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해당국가 공증필<재학(졸업)증명서>
9. 유학 경비 부담 서약서 1부	▪ 본교 소정 양식 : 재정보증인 날인
10. 예금잔고증명서 원본 1부	▪ 본인 혹은 재정보증인 명의의 미화 \$20,000 상당 예금잔고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되어야 함)
11.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원본 제출
12.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 증명 서류로 대체 가능(3개월 이내 발급)
13.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서류 1부	▪ 5쪽, '외국인전형 지원자격 어학능력 필수조건' 참조

※ 영어 이외의 모든 외국어로 된 서류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한국어로 공증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부는 위 표의 비고란에 따라 제출함)

다. 북한이탈주민

- 1) 대학 입학원서, 지원자격확인조서(본교 소정양식)
-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3)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원본)
- 4)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 5) 이력서(자유양식)
- 6) 자기소개서(자유양식)

※ 신학과 지원자는 지원구분에 따라 다음 서류들을 추가 제출합니다.

지원구분	제출서류
교구 성직지망자	영세증명서, 견진증명서, 부모혼인성사증명서, 본당주임신부 및 교구장 추천서(교구 성소국에서 발급)
일반지원자(수도자 포함)	영세증명서, 본당주임신부 추천서 또는 수도회 장상 추천서(본교 소정양식)

9. 대학입학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가.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

-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 계수 대상에 포함됩니다(단, 부모 모두 외국인은 제외).
- 수시모집 모든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포함)은 최대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 지원한 모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을 지원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나. 이중등록 금지

-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경우 반드시 그 중 하나의 대학만을 선택하여 등록(등록예치금 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이중등록 시에는 등록된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됩니다.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에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이전에 등록한 대학의 등록을 포기해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 가.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나 변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며,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격, 입학한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합격, 입학을 취소하고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환불은 본교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 나. 지원자격 확인조서 및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은 제출한 지원서류의 조회(출입국사실조회, 학력조회 등)를 거쳐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 제출서류 접수처에서 접수가 완료된 지원자격 확인조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부(원서접수 수수료 제외)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본교가 판단하는 학력수준에 미달된 자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마. 졸업예정자로 합격한 자는 2019. 2. 28(금)까지 졸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합니다.
- 바.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가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2019. 2. 14(목) 16:00까지 환불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은 본교 「수업료 및 입학금 반환규정」에 의하여 환불하며, 등록금 환불을 받으려면 본인 및 보호자의 도장,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성신 교정 교학팀에 방문하여 등록포기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등록 개시 후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전형에 한하여 미등록충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아. 시험 기간 중의 연락처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곳의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불확실한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입할 경우 연락 두절 등에 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 지원자격 확인조서 및 입학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착오,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차. 원서접수 시 배부하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카. 고사 당일에는 수험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타. 학력조회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 시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학한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파. 신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과 관련하여 본 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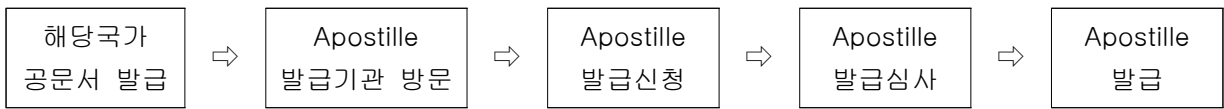
11. 아포스티유(Apostille) 안내

가. 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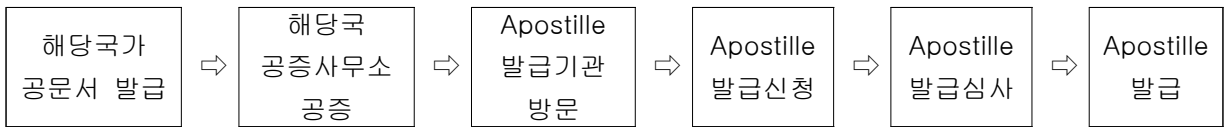
- 1)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 국에서 지정한 정부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은 해당국 정부(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에서 지정한 기관임
 -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함
 - ※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에도 “아포스티유 확인서” 대신 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 2)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일 이후 졸업증명서를 아포스티유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발급절차

1) 공문서(국·공립학교 등)



2) 사문서(사립학교 등)



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지 역	국 가 명
아 시 아	대한민국, 몽골, 브루나이, 홍콩, 마카오, 일본, 인도, 이스라엘, 터키, 오만,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유 럽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핀란드, 에스토니아,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안도라,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아메리카	미국, 멕시코,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바류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두라스,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세인트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모리셔스, 카보베르데, 상투에 프린시페,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말라위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피지, 마우리제도, 마셜군도, 사모아, 쿡제도, 통가, 세이셸제도, 니우에

II. 등록 안내

- 가. 합격자는 2018.12.17(월) ~ 12.19(수)에 등록확인예치금 또는 입학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입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등록확인예치금 또는 입학동의서 미제출 시 등록포기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합니다).
- 나. 등록확인예치금 또는 입학동의서를 제출한 합격생은 이후 정시모집 합격자의 최초등록기간<2019.1.30(수)~2.1(금)>에 고지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가톨릭대학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성신교정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96-12 / 전화 : 02-740-9704~5 / 팩스 : 02-741-2801